

의안번호	제 194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7월 일 (제 302 회)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 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1년 6월 30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#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년 6월 30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탁 및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검사와 지도업무를 추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(안 제6조제7호)
- 진흥원 업무와 예산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할 수 있는 업무기능을 추가 (안 제8조제2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해당 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산업자원부장관”을 “주무관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7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 중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업무

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예산에 관하여 감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정관) ① (생략) 1.-12. (생략)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 라 한다)를 경유하여 <u>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제6조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-5. (생략) 6. <u>도지사가 위탁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 육성사업</u> 7. (생략) (<u>신설</u>)</p>	<p>제5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 1.-12. (현행과 같음) ② ..... ..... ..... <u>주무관청</u>..... .....</p> <p>제6조(사업) ..... ..... 1.-5. (현행과 같음) (<u>삭 제</u>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 7. <u>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 중 도지사가 위탁 하는 사업 또는 업무</u></p>
<p><u>제8조(운영비 등 지원)</u>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(<u>신설</u>)</p>	<p><u>제8조(운영비 지원 등) ①</u> ..... ..... ..... ....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지원한 예산에 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